
	규정	문서번호	TWP-A503
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학생 장학 규정	개정일자	2024. 02. 29.
		개정번호	11

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적용범위)
- 제3조(장학금의 종류)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
- 제5조(장학생의 선발)
- 제6조(위원회 기능)
- 제7조(장학금 대상과 지급)
- 제8조(지급 및 기간)
- 제9조(장학금 신청)
- 제10조(장학증서)
- 제11조(이중지급 금지)
- 제11조의2(수혜원칙)
- 제12조(자격제한 및 반환)
- 제13조(보칙)
- 부칙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1996. 06. 01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	
직 책	담 당	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3
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학생 장학 규정	개정일자	2024. 02. 29.
		개정번호	1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5.25>

제2조(적용범위)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장학대상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고, 이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12.5.25>

제3조(장학금의 종류) 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12.5.25.>

1. 교내장학금 : 성적우수장학금, 학생리더봉사장학금, 보훈장학금, 학생활동장학금, 희망장학금, 가족장학금, 글로벌인재장학금, 근로장학금, 교직원장학금, 면학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일학습병행장학금, CEO추천장학금, 다문화가족장학금, 운동부지원장학금
2. 교외장학금 : 장학재단장학금, 지방자치단체장학금
3. 국가장학금 : 국가장학금1유형, 국가장학금2유형, 국가근로장학금, 보훈장학금

② 그 외 기타(특별) 장학금은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[전문개정 2020.02.26.]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0조의2의 학생복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2.5.25>

제5조(장학생의 선발) 장학생은 추천을 받은 후보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선발하며, 위원장은 총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 2012.5.25>
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2.5.25>

1. 장학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5.25>
2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5.25>
3.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5.25>
4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<개정 2012.5.25>

제7조(장학금 대상과 지급) ① 이 대학교의 재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>

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2.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3.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대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자<개정 2012.5.25>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3
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학생 장학 규정	개정일자	2024. 02. 29.
		개정번호	11


4. 모범적인 학생자치 활동 실적이 있는 자. 단, 활동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., 2022.12.30>
5. 이 대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(배우자) 및 그의 부모(배우자 부모)와 직계자녀, **형제자매(배우자 형제자매)**(다만, 교직원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 30%, 2년 미만 50%, 2년 이상 100%를 지급함)<개정 2010.4.12., 2012.5.25., 2020.02.26., 2022.12.30., 2023.02.28. 2024.02.29.>
- 5-1. 이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<개정 2012.5.25., 2022.12.30>
6. 국가 또는 이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<개정 2012.5.25>
7. 삭제<2012.5.25>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<신설 2012.5.25.>
9. 관련 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근로한 자(국가근로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등)<신설 2022.12.30>
10. 이 대학교와 MOU 등 협약 체결에 의해 입학한 자 또는 장학금 대상자<신설 2022.12.30>
 - ② 삭제<2021.02.26.>
 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장학금 선발 심의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22.12.30.>
 1. 보훈장학생 중에서 국고와 이 대학교의 보조로 등록금이 감면되는 자
 2. 국가장학금1유형 대상자
 3.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자녀
 4. 가족장학금, 학생리더봉사장학금, 국가근로장학금, 근로장학금, 운동부지원장학금 대상자
 5. 외부장학금 중 장학금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
 6.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지급사유가 명확한 장학금

제8조(지급 및 기간)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지급학기 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외부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4.12>

제9조(장학금 신청) 삭제<2010.4.12>

제10조(장학증서) 삭제<2021.02.26.>

제11조(이중지급 금지) 삭제<2020.02.26>

	규정		문서번호	TWP-A503
			제정일자	1996. 06. 01.
	학생 장학 규정		개정일자	2024. 02. 29.
			개정번호	11

제11조의2(수혜원칙) 장학금은 등록금액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가성 장학금(근로장학금, 리더봉사장학금 등)은 제외 한다.<신설 2020.02.26.>

제12조(자격제한 및 반환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21.02.26.>

1. 보훈장학생 중에서 국고와 이 대학교의 보조로 등록금이 감면되는 자<개정 2012.5.25>
2.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자녀<개정 2021.02.26.>
3. 삭제<2020.02.26.>
4. 징계대상자 중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자<개정 2012.5.25>
5. 휴학자 중에서 장학사정일 이전에 휴학한 자. 다만, 군 입대 및 질병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.<개정 2010.4.12, 2012.5.25>
6. 삭제<2021.02.26.>
7.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3학점 미만인 자<개정 2020.02.26.>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하며,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,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한다.<개정 2012.5.25., 2022.12.30>


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2. 장학금을 제외한 이 대학교 납입금의 차액을 기일 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<개정 2012.05.25>
3. 장학사정일 이전에 미등록 휴학을 한 경우. 다만, 군 입대 및 질병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.
4. 삭제<2012.05.25>
5.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<개정 2012.05.25., 개정 2022.12.30>
6.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3학점 미만인 자(성적우수장학금에 한함)<신설 2022.12.30>
7. 그 밖의 사유로 장학생으로의 선발이 부적합한 자<신설 2022.12.30>

제13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단, 국가근로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관련 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12.05.25., 2022.12.30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3	
		제정일자	1996. 06. 01.	
	학생 장학 규정	개정일자	2024. 02. 29.	
		개정번호	11	페이지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삭제 2020.02.26.>